

노인학대의 의미와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연구*:

질적 조사연구

우 국 희**

[요 약]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학대가 정책결정가나 전문가의 관점에서만 접근되어 왔을 뿐 노인들 자신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성에 기반하여, 전문가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학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노인학대, 그리고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 노인들은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추구하고 보호자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삶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노인들은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사회적 규정과 구별되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를 광범위하게 규정지음으로써 특정 계층의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도 처벌중심의 제한된 형태나 가족부양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노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주제어: 노인학대, 사회적 구성주의, 독립, 프라이버시, 주체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03-C00393)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문제 제기

노인학대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주요한 노인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1975년 영국에서 첫 사례가 보고되면서부터 시작된 노인학대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노인학대를 보편적인 현상,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 이후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최해경, 1993 : 한동희, 1996 : 이영숙, 1997 : 김한곤, 1998 : 조애지 외, 1999 : 서운 2000), 또 노인학대 신고전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학대는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에 의해 숨겨졌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Stearns, 1986). 그렇다면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그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노인학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조사들은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합의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편의에 따라 상이한 노인학대 유형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중 매체는 피해 노인의 고통과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선부른 정책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¹⁾

어떤 제도나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함에도, 노인학대는 학문적으로 아직까지 일관되고 통일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 노인학대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떤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률이 1%에서 10%에 이르는 등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Hudson, 1986 : 152), 조사자들마다, 전문가 집단마다 상이하게 접근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가 어렵다. 노인학대 정의가 전문가, 지역, 정부정책에 따라 다른 이유는 관련 당사자들이 상이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즉 법률가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임상가들은 대상자의 안전과 서비스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Childs, 1994 : 4).

이렇듯,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집단의 목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노인학대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획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노인학대 정의를 마련하려는 비생산적인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례로, 최근 NARCEA(National Aging Resource Center on Elder Abuse)의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인학대를 다중적인 차원을 가진 포괄적 개념임을 인정하고, 어떤 특정 정의를 고수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 정의하되 단지 그 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Carp, 2000 : 7)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에 동의했다.

1) 대중매체는 자녀가 노인을 때렸거나 유기했다는 식의 센세이셔널한 사건들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노인학대가 적절히 이해되기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성급한 제안을 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문화적,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라면, 노인학대를 연구하는 올바른 질문 방식은 노인학대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노인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노인학대가 정책 관련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들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노인들 자신의 목소리는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반성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Harbison & Morrow, 1998; Kingston & Fenhale, 1995). 즉, 노인의 욕구가 노인 자신들에 의해 제기되기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 평가되어 왔으며, 노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적절한 개입들이 모색되어 왔다. 그리고 연구자, 임상가, 입법 및 정책결정 관련자들의 관점에서 조사들이 규정되고 노인은 단지 미리 결정된 질문에 대답하는 수동적인 반응자로서 조사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이와 관련하여 Lingsom(1996)은 노인의 욕구가 사실(fact)에 기반되지 못하고 판단(judgement)에 기초해 왔다고 주장했다(Russell & Schofield, 1999 : 73). 이러한 반성적 비판은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술이나 법 규정보다는 노인들의 문화적 가치, 태도, 전통을 수용하고 특정 행동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Carp, 2000 : x).

따라서, 아내학대, 아동학대에 뒤이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규정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에 대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인 노인들이 노인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이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노인학대 관련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되어온 서구와는 달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접근 방법은 노인학대의 개념을 조사자들이 서구의 문헌에 기초하여 사전에 규정한 뒤 이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노인의 인식을 끌어내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과연 노인학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 및 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노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무엇이 과연 노인학대이며,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에서 노인 당사자들을 소외시켜왔던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반성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에 근접한 사회서비스 정책 및 실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학대와 사회적 구성주의

1) 노인학대 개념의 역사적 전개과정

노인학대 개념은 이론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현상에 기반 된 사회적 구성물로서, 1975년 영국에서 노인구타(granny batterin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 확대되어 왔다. 신

체 폭행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던 초기의 구타(battering)라는 개념은 점차 다양한 형태의 학대, 예를 들어, 정서적/심리적 학대, 착취, 방임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개념인 학대(abuse)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구타에서 학대라는 용어로의 변천은 신체적 폭행 이외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Aitked & Griffin, 1996 : 32)

일찍부터 Estes(1979)는 노인문제가 노인들 자신으로부터 나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노인을 위해 만들어낸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정치가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노인학대 개념은 서비스와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Miller, 1987)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초창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노인 당사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노인학대를 사회문제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에겐 노인학대가 무엇이나를 규정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피해노인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노인학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 피해자가 상당 수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노인구타에서 노인학대로의 개념 전환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했는데, 정서적/심리적 학대, 물질적/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권리의 침해 등 노인학대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아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관련 정책들을 끌어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인학대 개념에 자기방임(self-neglect)의 유형을 포함시킴으로써 결정적으로 더 많은 피해 노인들을 발견가능케 했다.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에 의뢰되는 노인학대 케이스 중 74%가 자기방임의 형태였다(Longres, 1995:70) 사실을 통해 볼 때,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노인학대 발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노인학대에서 자기방임의 형태가 대부분임에도 대외적으로는 자기방임이 아닌 신체적 폭행이 노인학대의 중심적 형태로서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자기방임이 피해 노인의 광범위성을 보여주었다면, 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가 노인들에게 매우 해롭고 위험한 현상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의 긴급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폭행 중심에서 다양한 학대 유형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됨은 노인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노인학대의 개념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Cloke(1983)는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라는 포괄적인 용어 안에 광범위한 학대 유형들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발전도구로서 거의 의미없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Decalmer & Glendenning, 1993 : 8), Pedrick- Cornell과 Gelles(1982) 또한 노인학대는 정치적 개념일 뿐 과학적으로는 무용지물인 개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Johnson, 1986 : 168).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되자, 노인학대 개념규정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노인학대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입장과 표준적인 정의는 고수하되 노인학대를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노인학대의 표준적인 개념을 찾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해 모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의 정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비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Carp, 2000 : 6-7). 반면, 후자는 노인학대 개념의 모호성은 노인학대라는 큰 범주 안에 또다시 학대라는 하위 범주를 사용하는 동어반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용어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일반적 범주로서의 학대는 maltreatment, mistreatment,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 등의 용어(Fulmer & O'Malley, 1986 ; Johnson, 1986)로, 하위 범주로서의 학대는 abuse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Johnson은(1986) 노인학대와 방임을 포괄하여 "elder mistreatment"로 부르는 것이 보다 의미 있다고 제안하였다(Breckman & Adelman, 1988 : 12). 일반적 범주로서의 학대인 mistreatment 안에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 등의 하위 범주가 제안될 수 있으며, 이때의 학대(abuse)는 재정적 착취, 방임을 제외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maltreatment, mistreatment라는 개념의 사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용어가 학대나 방임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비난적 의미를 덜 담고 있어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arp, 2000 : 7). 달리 말하면, 노인학대에 자기방임이 포함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따라서 가해자를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학대(abus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maltreatment)에 대해서도 비난의 의미가 덜 담겨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보호자를 가해자로 간주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구타에서 노인학대로, 노인학대에서 다시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로 용어가 바뀌어 사용됨은 노인학대 발견율을 높여 대중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표준화된 정의 마련의 어려움으로 학문적으로는 부용지물인 개념이 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노인학대 개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규정해 놓은 노인학대 개념에서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욕구를 좀더 정확히 반영하는 개념을 설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Lachs & Pillemer(1995), Quinn & Tomita(1997) 등은 노인학대는 노인의 욕구에 초점을 둬으로써 노인학대 개념이 당사자인 노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학문적 활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Carp, 2000 : 8).

2)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의미는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 노인학대 개념과 접근 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인을 규정짓는 사회적 개념들은 상호충척된 다음의 3가지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이 3가지 고정관념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노인학대의 의미를 구성한다.

첫째, 노인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온정주의적 관점이 있다. 노인은 취약하고 의존적 이므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은 종종 "동정적 노인차별주의(compassionate ageism)"로 표현된다(김정석·김영순 역, 2000 : 39). 이 관점에 의하면, 모든 노인들은 개인적 잘못

과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의존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사회와 가족은 노인의 이러한 욕구에 직면해 그것을 경감 혹은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대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원인을 찾는 논의들이 이런 류의 노인 이미지를 발달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을 위한 공적 프로그램의 틀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전문가주의 및 건강보호산업의 성장은 의존적 구성물로서의 노인 개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Harbison, 1999 : 62)

노인을 의존적인 구성물로 틀 지을 때 노인학대는 부양의 문제로 개념화되고 아동학대와 동일시된다. 그 결과, 노인학대는 강제 신고, 강제 보호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아동학대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신고법(mandatory reporting laws), 성인보호제도(adult protection legislation), 보호자제도(guardianship)는 노인을 아동과 같은 의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노인은 그들 스스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와,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며 약자를 위한 사회의 강제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Schimer & Anetzberger, 1999 : 20).

둘째, 노인을 사회의 짐, 또는 부담으로 보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이 있다. 이는 노인들이 비생산적 이어서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복지 자원에 대한 노인들의 과다한 욕구가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론과 결부되어 노인이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급속도로 증대시켰으며, 부양부담에 대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적절한 보호로 희생당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강조하게 했다(Biggs, Phillipson, & Kingston, 1995 : 15-6).

노인은 곧 부담이라는 등식에 따를 때 학대는 상호적으로 규정된다. 즉 노인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백히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노인과 보호자 모두 가해자나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을 가족부양자의 부담이 되는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현상을 가족부양자의 부담 및 스트레스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인을 부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할 때, 부양 가족은 가해자라기보다는 숨겨진 또 다른 피해자(hidden victims)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또 다른 서비스 대상층임이 강조된다. 최근 학대나 방임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가족에 대한 비난적 의미를 덜 담고 있어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는 데는(Carp, 2000:7) 이러한 관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관점에 기반할 때,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노인 당사자보다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 예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주된 접근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발인의 과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노인들을 유기, 학대하는 경우에 대해 가족 수발자 등록, 지지집단 형성 및 지원, 수발 가족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 단기 보호 등 융통성 있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Kingston & Penhale, 1995 : 201).

셋째, 노인을 일반 성인집단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는 법률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시민으로서의 노인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고, 동시에 모든 성인은 자기결정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본다. 노인은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적인 판단이 미숙한 아동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된다(Ogg, 1993 : 39).

개인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는 권리의 침해로서 일종의 불법적 행동, 즉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대체로 신체적, 성적, 재정적 학대는 범죄로 인정되고 다양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형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우국희, 2001). 그런데 노인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개입은 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개입의 권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법적 절차가 적용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 관점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전문적 활동과 보호를 거부하는 피해자 권리 사이에 긴장을 유발시킨다. 대중 매체는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노인들의 피해 사례, 특히 신체적 학대, 성적 공격, 재정적 학대 등의 사례를 자주 보고함으로써 법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Penhale & Kingston, 1995 : 22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을 구성하는 사회적 개념은 의존, 부담, 권리 등으로, 이러한 3가지 중첩된 구성물이 노인학대의 관점과 사회적 접근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존이라는 구성물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발달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노인의 자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두 번째의 구성물인 부담은 노인학대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의존을 노인의 본질로 고착시킴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라는 사회적 구성물은 노인을 다른 사회집단과 동일한 시민으로 전제함으로써 노인을 사회 안으로 통합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권리 침해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한 점, 그리고 노인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제한시키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활용되는 제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

조사 대상자는 의도적 표집전략에 따라 선정되었다. 의도적 표집은 연구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실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피해 노인이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지만, 그보다도 노인학대에 대한 명

확한 개념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반영되었다. 즉, 본 연구는 피해 노인을 통한 학대 개념을 규정짓거나 피해 노인만의 경험을 연구하기보다는 다양한 노인 집단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노인학대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노인으로 대상자를 국한시키지 않았다.

조사 대상 노인들의 선정 방법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거나, 선정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적합한 노인들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기법을 활용하였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기준은 의사표현능력과 자녀 유무였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들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인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의사소통 하는데 문제가 없는, 다시 말해 비교적 인지적 수준이 높은 노인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타인에 의한 학대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가족 내부의 학대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배경의 노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연령, 성, 가족과의 동거 유무,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등이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엄격한 사전 선정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조사 내용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인들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수는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 대상자 선정을 중단하였다. 이는 질적연구에서 적절한 표본 수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Lincoln & Guba는 유의표집에서 표본의 크기는 정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새로운 표본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표집을 종료하는 것이 질적연구 표집의 일차적 기준이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Patton, 1990 : 185-186).

2) 조사방법

노인들의 인식을 통해 노인학대를 개념화하려는 작업은 중요한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다. 연구의 초점이 노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이해에 놓여있기 때문에 질적인 조사접근이 적절하다. 질적 조사는 일 반화, 보편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반면, 연구의 주제가 거의 조사되지 않았고, 또 핵심 차원과 핵심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그들의 말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하고 가치있는 방법이다(Russell & Schofield, 1999 : 75).

질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접근은 이미 기존에 제안된, 전형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다시 말해, 조사자에 의해 이미 결정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가 아니라, 질문이 어떠한가 하며(what the questions should be), 어떻게 질문되어야 하는지(how the questions should be asked), 누가 그 질문을 해야 하는지(who should do the asking)를 결정하는데 조사 대상

자들이 동반자로서 참여하게 된다(Schriver, 2001 : 8). 본 연구는 기존에 나와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한 노인들의 수동적인 응답을 구하기보다는 노인들의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조명하고, 또 그것을 그들의 말로써 기술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적인 접근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인 조사방법은 심층적 인터뷰로서 인터뷰는 모두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개인별 인터뷰 시간은 평균 40분에서 50분 가량 걸렸다. 이는 비교적 노인에게 적당한 인터뷰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노인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신체적으로 장시간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노인과 노인학대에 대한 전체를 갖지 않고, 가능한 한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을 구조화하지 않았으며, 단지 인터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인터뷰 지침만을 준비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인식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터뷰 지침에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학대에 대한 인식 영역이 함께 포함되었다. 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사회에서 노인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은 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노인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어떠한지 등이 조사되었으며, 노인학대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학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노인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특히 다른 노인의 학대 사례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밀보장성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의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에 기반하여 분석되었다. 지속적 비교방법이란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자료의 코딩방법으로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 절차는 텍스트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비교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확인하고, 이들 개념들을 의미 있는 범주로 분류한 후, 범주들간의 연계를 제안하는 방법이다(Minichiello, et al., 2000 : 257). 이 방법에 기반하여, 처음에는 개별 녹취록을 전체 한 번 통독함으로써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얻었고, 그 후 재독 시에는 한 줄씩 읽고 떠오르는 잠정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인터뷰 내용들을 분류시켜 나갔다. 이 과정은 반복적, 반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주제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 앞 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범주를 재조직화하였다.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였는데, 이는 의미를 누락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결과 주제의 일관성이 높아졌다.

주제들은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처음에는 20여 가지의 주제들이 출

현하였으나 반복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9가지 주제로 축소되었다. 노인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독립, 프라이버시, 보호자라는 하위 주제가,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무시, 고립, 친밀 관계의 단절이라는 3가지 주제가, 그리고 노인학대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으로는 희생, 순응, 독립생활이라는 3가지 주제가 나타났다. 이들 개념들은 모두 노인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 노인학대를 이해하는 방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했다.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은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의 확실성(credibility)을 높여주는데 주요하게 기여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출처의 삼각측정을 통해, 즉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결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²⁾

4. 조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에 참여한 노인은 모두 10명으로 연령 대는 50대에서 80대에 걸쳐 있었다. 50대가 1명, 60대와 70대가 각각 4명, 80대가 1명이었다. 성별은 여성 노인 7명과 남성노인 3명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연구자가 대상자를 접촉한 장소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주로 여성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여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출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참가 프로그램의 종류는 1가지에서 3가지 사이에 있었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명,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3명이었다. 자녀와의 동거 유형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출가한 기혼자녀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 출가한 기혼자녀가 부모 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 손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서 분리되어 사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노인성 질환을 한두 가지씩 갖고 있는 것 외에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적 수준은 극빈층에서 중상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입이 현재 있는 노인은 2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체로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이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3명 있었다.

2)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신뢰도, 타당도란 개념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고정불변의 현상이나 객관적 실재를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관점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Lincoln & Guba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들의 일관성(consistency)과 확실성(credibility)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Marshall & Rossman, 1989), 연구 결과의 일관성은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하는 것, 자료를 삼각측정하는 것을 통해(Merriam, 1990), 확실성은 대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주관적 경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자료수집 기간동안 지속적인 비교분석하는 것 등(유은광, 1993 : 716)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대상자 | 연령 | 성별 | 학력 | 일상생활기능수준/질병 | 배우자 | 주택 소유 | 동거가족 | 경제수준 |
|-----|-----|----|----|-------------|-----|-------|----------|-------------|
| A | 58세 | 남 | 대졸 | 양호 | 있음 | 자가 | 부부+미혼자녀 | 중(교사) |
| B | 60세 | 여 | 국졸 | 양호 | 있음 | 자가 | 부부+미혼 딸 | 중 |
| C | 62세 | 여 | 중졸 | 양호 | 있음 | 자가 | 부부 | 중 |
| D | 65세 | 여 | 고졸 | 양호 | 있음 | 자가 | 부부+이혼한 딸 | 하(남편:경미) |
| E | 68세 | 여 | 무학 | 양호/관절염 | 사별 | 아들 집 | 큰 아들가족 | 중하 |
| F | 73세 | 남 | 국졸 | 양호/당뇨 | 있음 | 자가 | 부부 | 중 |
| G | 74세 | 여 | 중졸 | 양호 | 있음 | 아들 집 | 부부+큰아들가족 | 중상(아들:여관운영) |
| H | 74세 | 여 | 무학 | 양호/고혈압, 심장병 | 있음 | 친척 집 | 부부+손녀 | 하 |
| I | 78세 | 여 | 국졸 | 양호/관절염 | 사별 | 아들집 | 아들 가족 | 중 |
| J | 80세 | 남 | 고졸 | 양호/관절염 | 사별 | 딸집 | 기혼 딸 가족 | 하 |

2) 결과 분석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경로

조사대상자들이 노인학대를 접하게 된 주된 통로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위의 목격담보다는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였다. “주위에서 간접적으로 들어봤고,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에서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A), “TV에서 많이 보죠. TV에서 안 봤으면 모르고 사는 거죠”(F, H), “TV나 방송을 통해서 좀 들었지, 주변에선 별로 못 들었어요”(D), “집에다 가둬놓고 그런 것 빈번히 보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에서”(C). 친구나 친지들로부터의 한두 사례를 듣거나 목격할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학대보다는 불효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노인학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데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난 노인학대의 이미지는 주로 신체적 폭행과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TV에서 보면 매 맞는 분들 많아요, 학대가 심한 것 같아요”(H), “학대하면 육체적인 고통, 부러지고 그런 것이 먼저 떠올라요, 학대 속에는 육체적인 고통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A), “예전의 불효보다 훨씬 과격하다. 옛적에는 마음만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포학해져 버렸다”(J)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행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밥을 안주는 것”(C, J), “큰 소리지르고 대드는 것”(H, J),

“방에 물을 때어주지 않는 것”(G), “가뉘놓고 문 잠가버리는 것”(J) 등도 대중매체나 주위의 경험을 통해 학대로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서구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대중 매체는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게 하기보다는 사회적 제도마련의 긴급성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인식된 노인학대의 유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한 조사대상자들은 폭행 중심의 노인학대를 극단적인 소수의 경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때린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직접 목격을 못했으니까 믿기가 싫어요”(H), “때리는 것 그런 것은 없을 테죠, 주위에서 본적이 없어요”(I), “크게 학대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좀 있겠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B)라고 진술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노인학대라는 개념을 인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외면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의미와 정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인관련 문제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노인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노인학대의 의미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의미와는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폭행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짓기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지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의미는 노인과 학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① 노인 : 독립, 프라이버시, 보호자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노인의 개념과 상이한 개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 나름의 기준에 따라 노인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노인은 의존, 부담, 스트레스의 출처라기보다는, 독립, 프라이버시, 보호자라는 사회 일반의 가치 체계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는 독립으로, 독립은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지는 일생의 목표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기에 독립적인 삶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노인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노인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는 “49세가 되니까 직장 동료들이 영감이라고”(J) 하거나 “매스컴에서 60세 정도 되신 분들한테 할머니라고 그러는”(D) 등 퇴직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노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조사대상자들은 “나하고 싶은 것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활 있고,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노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D),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난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A), “내가 90살을 먹었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지, 노인 하고 전혀 상관없다”(C)라는 말에서처럼 조사대상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노인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보장받는데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편한데요, 큰아들이 같이 살자 그래도 우린 안 편하니까 싫다고 그러죠, 내가 혼자 밥만 해 먹을 정도만 되면 계속 혼자 살고 싶어요”(C), “혼자 있는 게 좋아, 같이 있으면 내가 불편해 죽겠어”(D), “며느리랑 같이 살면 친구들 놀러 오는 것도 다 조심해야 되고”(C), “자식들이 오면 오히려 내가 불편해, 드러눕고 싶어도 눕지 못하고”(D), “같이 살면 젊은 사람도 자유스럽지 못하겠지만, 부모도 마찬가지야”(I). 이러한 노인들의 인식을 통해 볼 때, 의존적 존재로서 노인을 규정짓는 사회적 고정관념은 실제로 노인들의 자유로운 삶과 프라이버시라는 기본 욕구를 오히려 구속하고 억압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나 자유의 침해는 노인세대보다는 자녀세대의 주된 욕구이자 관심사로서만 접근되어왔으며, 외부 사회에 대한 가족의 프라이버시로서 강조되어 왔다. 다시 말해, 노인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거나, 가정 내 학대가 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기제로서 가족 프라이버시가 언급되었을 뿐, 노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는 간과되기가 쉬웠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들 또한 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보호를 제공하는 주체, 즉 보호자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성별이나 연령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고령이면 고령인대로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자녀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보호는 적극적인 도움 제공에서부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수동적인 회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보호의 형태로는 손자녀를 맡아 키우는 것(E, H, G), 집안 일을 도맡아 하는 것(G, J),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C) 등의 형태가 있었다. 수동적인 형태의 보호제공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회피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혼자되어 병이 생기면 시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거나, 자식들 안보는 데로 아주 멀리 종적을 감춰 버리겠어요”(H), “제 경우는 아침에 밥 먹고는 밖으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한테 자유를 주자 싶어서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점심 먹고 다시 나오면 저녁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요”(I), “집에서 24시간 있는 것보다 이런데 나와서, 며느리 단 10분이라도 쉬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비켜줘서 며느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J) 등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짐만 되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편견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들 자신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노인의 개념은 “의존”, “퇴물”, “죽음”이었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죽을 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존재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은 겉으로는 이를 수용하는 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무조건 늙었다고 퇴물 취급하고, 늙어서 뭐 할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대응은 못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좀 서운해요. 싸우거나 대항하지는 않지만, 마음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J),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 나름이듯이, 노인도 노인 나름이에요. 왜 노인은 무조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D), 이렇듯,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사회적 편견에 근거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러한 편견을 노인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노인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더 큰 편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살림을 하고 뭐라도 자손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죽어지내는 편은 아니예요”(E)라는 한 조사대상자의 밑에서처럼 보호자로서의 기능 수행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 욕구인 독립성을 노년기에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면이었다.

② 학대 : 무시, 고립, 친밀관계 단절

사회적 가치체제와 상반되는 의미를 통해 노인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은 노인 학대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노인에게 심적으로 고통 주는 것 다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공경하는 것 빼고 다 학대다”(F), “마음이 불편하면 사는 게 아니다.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다 학대다”(B), “노인을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학대다”(H), “노인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서 노인학대라고 규정하고 싶다”(A)라는 언급에서처럼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학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노인학대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나 태도가 “의도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 생활화가”(A) 될 때만이 학대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학대를 이렇듯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태도는 학대가 특정 노인, 특수한 집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노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학대의 주된 형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학대는 “무시”라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한 대상자는 “노인네 무시하는 게 첫 번째 학대다.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직접 매 맞는 것보다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른다”(C)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시당하는 경우의 예로는 “가고 싶은데 안 데리고 갈 때 그럴 때 무시당하는 것 같다”(C), “젊은 사람들끼리만 의논해서 처리하는 경우”(A)나 “자녀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간다는 말을 안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국여행 나갔다는 소릴 전해들을 때”(I)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아파도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아픈면 아픈가보다 하고, 뭐 하나 의논하는 게 없어요. 이러한 태도가 무시하는 거란 생각이”(E) 든다고 하였다. 한 조사대상자(A)는 이렇게 노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홀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무시가 노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학대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것이 노인들을 가족 안에서 고립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하고 부부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노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C)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가족들끼리만 가서 이를 저녁 자고 오고 할머니 혼자만 있게 했어요”(G),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그 누구하고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면 멍하니 있는 수밖에 없지요”(I),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답해주는 사람도 없다”(E)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안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고립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 또한 학대의 일반적 유형이었다. 이러한 고립은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학대행위에 의해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가족 성원과 노인과의 관계 형성을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손자녀와의 관계 단절이었다. “손자를 할머니한테 못가게 하고 따로 자게 해서 할머니가 혼자 있는데, 그게 학대같아”(G), “손주들하고 친하게 못지내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것”(C) 등을 언급했으며, 그 외 노인 친구와 가까운 친지간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조사대상 노인들은 노인학대를 무시, 고립, 친밀관계 단절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의미가 대중매체나 전문가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폭행중심의 학대보다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유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으며, 상처받은 것은 굵으면 더 커지기”(A)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 규정은 노인학대를 특수한 노인의 문제로 보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경험할 미래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람마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건강의 상실로 의존의 상태에 들어가므로, 의존은 불가피하게 그들 자신의 독립된 자아상을 해치게 한다.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 수족없을 때, 나를 어떻게 봐줄러나”(I) “내가 늙어서 아무 것도 못 도와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G), “우리가 더 늙어서 정말 소·대변도 못 가릴 때는 어떻게 하겠나”(C)는 등, 그들은 미래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노인학대는 이렇듯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문제로 국한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미래의 그들 자신의 문제인 노인학대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그 범위를 협소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넓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는데, “학대를 광범위하게 잡는 것이 모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관한 주관적 인식: 체념적 순응, 적극적 적응, 독립된 생활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는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지만, 현재 국가적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가 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해결책은 많은 부분 노인들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노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학대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회피의 형태로, 조사대상자들은 학대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회의 부당한 대우나 태도에 반박하거나 도전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체념적, 소극

적인 노력들을 제안하였다. “나이 먹은 사람이 세상을 많이 살아왔으니 나이 먹은 사람이 참아야지, 수양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생각하고 해서 참아야 돼요”(I), “노인들 중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을 아껴요. 말을 안하고 사는 게 은 집안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꼭 필요한 말만하고 말을 아끼자, 그게 편해요”(I).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참는 방법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E). 노인 개인의 희생은 개인보다는 가족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규범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었다.

희생보다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나가는 것,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노인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바뀌었는데 젊은 사람한테 맞춰가며 살아 가야죠”(H), “옛날이 아니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노인들이 노력을 해야돼요”(C)라는 언급에서처럼 현실에서의 세대간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외 일부 노인들은 “옛날에 찌들게 살기도 했는데, 이만하면 만족하죠. 좋은 세월에 사는 거죠”(E)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학대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을 더 이상 보호와 부양의 출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함께 사는 경우 긴장과 스트레스의 출처로서 보다 많이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인의 가족의 존이란 개념은 더 이상 조사대상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이 불가피하게 의존의 상태에 처했을 때,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A).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노인이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의 확보였다. “따로 나가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어요”(H). “노인들이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A). “쫓겨나도 있을 때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E).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노후에 연세도 많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시설같은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식이 있어도 받아주는 시설이 있는 거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H). 그러나 “안 보면 편하게 대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 자신도 편하고,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니깐요...”(H)라는 한 조사대상자의 언급처럼,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학대자와의 관계 단절을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대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전 관계로의 회복을 원하는 노인 소망의 강한 발로였다. 노인들은 이전의 삶과 이전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 그것을 오히려 지지하고 지속시켜주는 방향의 개입을 원했고 그것은 바로 독립된 생활양식의 유지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개입 방향은 가정폭력모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강제 개입의 형태와는 상이한 것으로, 피해자 격리보호, 가해자 처벌은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노인학대가 발생될 경우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은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옹어리가 켜있지”(H),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덮어두지, 가서 신고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B). 이렇듯, 조사대상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유일한 사회적 대응방안은 노인들이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는 노인과 그들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통해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학대발생 후의 개입보다는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며,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를 영구히 단절시키는 정책보다는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노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소수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인 관계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자도 여기에 소개된 표본이 대표적이며,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단정적이라기보다는 제시적, 제안적으로 해석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노인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학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노인과 의존은 더 이상 분리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노인 의존은 전체 노인집단이 아닌 일부 노인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노인은 오히려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주체로서 구성되고 있었다. 이는 노인이 의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주체성의 개념이 노인의 개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의존, 부담이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조사대상 노인들은 노인으로서의 삶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인이 독립, 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의미로 구성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모두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자신의 이미지로 통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상반되는 태도를 내면화시키고 있었으며, 자기 삶에서 독립성,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비록 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이 의존이 아닌 독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노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노인들 자신들은 그것을 바람직하고 적려되어야 할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내면화해서 그들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회적 와헤이론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노인들은 자기 삶을 재규정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인을 의존, 부담과 관련짓는 기존의 사회적 구성물이 독립, 자유, 주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둘째, 본 조사의 결과, 노인학대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모든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학대를 노인들

스스로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독립된 삶을 추구하고 의존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보호자로서 보다 많이 기능하는 노인들이 노인학대의 잠재적 피해자라는 인식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게 한다. 즉, 노인학대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노인에 대한 학대, 가족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로 인한 학대라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넘어서, 독립된 삶을 지향하는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노인들 자신의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노인학대 개념은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노인 희생자들만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지향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하며, 노인학대만을 위한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종합적, 체계적인 틀 안에서 노인학대가 다루어지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은 신체적, 재정적, 유기 등의 노인학대 형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노인들은 무시, 소외나 고립, 친밀관계의 단절과 같은 학대의 형태를 가장 우려했다. 이러한 노인들 자신의 관심을 고려하지 않을 때, 사회적 개입은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노인의 독립성, 프라이버시,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보장하고 지지하는 형태, 다시 말해 소외와 고립, 가족관계의 단절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노인을 가족의 부담 및 스트레스와 관련짓는 관점에서는 정책이나 사회적 개입 또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게 하고, 노인을 법적 권리 차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피해자 격리보호라는 정책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개입들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들은 그러한 개입들이 실제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나 대책은 노인의 욕구에 기반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할 때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노인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의 독립지향적인 욕구를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석·김영순 역, 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눔의 집.
- 김한곤, 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권 1호, pp.184-197.
- 서운,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권, pp. 27-72.
- 우국희, 2001. "노인학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4권, pp.209-231.
- 유은광, 1993. "질적 연구방법론과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간호학회지』, 23권, pp.713-715.
- 이영숙, 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 pp.359-372.
- 조예저 외, 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해경, 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논문집』, 제22권, pp. 273-286.
- 한동희, 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iggs, S., Phillipson, C. & Kingston, P. 1995. *Elder Abuse in Perspective*, Open University Press.
- Breckman, R. S. & Adelman, R. D. 1988, *Strategies for Helping Victims of Elder Mistreatment*, Sage Publications.
- Carp, F. M. 2000. *Elder Abuse in the Family: an Interdisciplinary Model for Research*, Springer Pub. Company.
- Childs, H. W. 1994. "A Comparison of Middle Aged and College Aged Adults' Perceptions of Elder Abus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North Texas.
- Decalmer, P. & Glendenning, F. 1993. *The Mistreatment of Elderly People*, SAGE publications.
- Fulmer, T. & O'Mally, T. 1986. *Inadequate Care of the Elderly*, New York : Springer.
- Harbison J. & Morrow, M. 1998. "Re-examin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 a Canadian Perspective", *Aging and Society*, vol.18, pp.691-711.
- Harbison, J. 1999. "The Changing Career of "Elder Abuse and Neglect" as a Social Problem in Canada: Learning from Feminist Framework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11(4), pp.59-79.
- Hudson, F. 1986. "Elder Mistreatment : Current Research", in *Elder Abuse : Conflict in the Family*, by Pillemer, K. & Wolf, R.(ed.),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 Johnson, T. 1986. "Critical Issues in the Definition of Elder Mistreatment", in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 by Pillemer, K. & Wolf, R.(ed.),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 Kingston, P. & Penhale, B.(eds.) 1995. *Family Violence and the Caring Professions*, Macmillan Press.

- Longres, J. F. 1995. "Self-Neglec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9(3), pp. 69-86.
- Marshall, C. & Rossman, G.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Merriam, B. 1990.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 Miller, L. 1987.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of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10(3/4), pp. 141-153.
- Minichiello, V. et al. 2000.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Ageism: Views of Older People", *Aging and Society*, vol. 20, pp. 253-278.
- Ogg, J. 1993. "Researching Elder Abuse in Britai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5(2), pp. 37-54.
- Patton,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Russell, C. & Schofield, T. 1999. "Social Isolation in Old Age :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Service Providers' Perceptions", *Aging and Society*, vol. 19, pp. 69-91.
- Schimer, M. R. & Anetzberger, G. J. 1999. "Examining the Gray Zones in Guardianship and Involuntary Protective Services Law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10(3/4), pp. 19-38.
- Schriver, J. M. 2001.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Allyn & Bacon.
- Stearns, P. N. (1986). "Old Age Family Conflict : the Perspective of the Past". In *Elder Abuse : Conflict in the Family*. Edited by R. Wolf & K. Pillemer. Dover, MA : Auburn. pp. 3-24.

The Meaning of Elder Abuse and Interventions for It :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People's Perceptions.

Woo, Kug-Hee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elfare, The Seoul Christian University)

Studies of elder abuse are increasing in our country since the 1990s. But few studies have researched how older people may perceive and give meaning to the phenomenon of elder abuse. Old people have been alienated from their own problems. Elder abuse was constructed as a social problem by experts, not by older people themsel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older people's perceptions on the meaning of elder abuse and interventions for it,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e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10 the elderly were as follows: The elder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s been constructing the aged as independence, privacy, and carer, which conflicts the existing social construction of the aged. They also had their own definition of elder abuse. They perceived all the psycho-emotional sufferings as major elder abuse. So, they understood that elder abuse was the pervasive problem which everyone would experience. They proposed that desirable interventions for it was to guarantee and to sustain their existing independent living.

[접수일 2002. 5. 28 게재확정일 2002. 6. 24]